

골재채취(선별·파쇄 및 선별·세척 포함) 현황보고

상호(법인명)	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등록업종				등록번호	
사무소 소재지				전화번호	
골재채취 현황 (/ 분기)					
허가(신고)기간	①허가(신고)량(m³)	채취량(m³)		허가(신고) 잔량 (m³)	
		분기중 채취량	연도누계		
반출 현황					
②공급지역	③용도별	반출량(m³)	④성분	㎥당 가격(상차도)	
「골재채취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 년 월 일 보고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,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					
기재 요령					
1. ①허가(신고)량은 골재선별 · 파쇄 및 바다골재선별 · 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,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.					
2. ②공급지역란은 시 · 군 · 구 단위로 기재합니다.					
3. ③용도별란은 레미콘 · 일반콘크리트 · 아스콘 · 도로기층 · 보조기층 · 철도 · 콘크리트파일 · 벽돌 · 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					
4. ④성분란은 산림골재(쇄석자갈 및 모래)인 경우 암석의 종류(화강암 · 현무암 등),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, 생산 지(하천 · 육상 또는 바다)를 기재합니다.					